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 학위논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부분통합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2009 년 8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 현 승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부분통합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지도교수 박 상 인

이 논문을 행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 년 6 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 현 승

이현승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 년 6 월

위 원 장 _____ 정 광 호 (인)

부위원장 _____ 김 상 현 (인)

위 원 _____ 박 상 인 (인)

【국문 초록】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배당소득세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갖는다.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 부분통합이 논의되어왔다. 법인세율보다 개인소득세율이 평균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통합하면 더 높은 세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과 개인소득세에서 통합의 근거가 되는 배당소득세를 분석하면 실제 배당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된다. 완전통합방법은 기업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세법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배제하고 부분통합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배당을 인위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통합했을 경우를 예측하거나 통합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를 보였다. 배당을 30%, 50%로 시뮬레이션만 하는 연구는 현행 조세데이터와 조세체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조세연구의 적실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는 2008년 국세통계요람의 실제 데이터와 2009년의 조세체계를 이용하여 부분통합방법별 재정수입을 계산하여 실증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실증분석한 결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부분통합은 이중과세를 제거하지만 세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 배당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귀속법인세액을 주주소득으로 귀속시켜 배당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도 소득이 상승하긴 했으나 소득구간이 변화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소득구간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는 현 조세체계에서는

세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 계산을 통해 부분통합시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과 재정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했다. 조세정책결정자가 이중과세제거, 재정수입 중에서 어느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지에 따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부분통합을 채택할지, 하지 않을 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연구의 기술적 순수성에 초점을 두었다.

주제어 : 법인세, 개인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부분통합, 실증 분석

【차 례】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개념정리	4
제 2 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6
제 3 절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의의	14
제 4 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방법	16
1. 완전통합방법	16
2. 부분통합방법	19
제 3 장 연구설계 및 연구분석틀	27
1. 연구문제	27
2. 모형의 설정	28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32
제 1 절 기초통계량 분석	32
제 2 절 실증분석방법과 결과	40
1.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40

2. 임퓌테이션 방식에 의한 결과	40
3. 수입배당공제방식 통합	47
4.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 통합	49
제 3 절 실증분석결과 해석	52
제 5 장 결론	56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56
2. 연구의 한계	58
참고문헌	60
Abstract	64

【표 차례】

[표 1] 선행연구정리	10
[표 2] 최고소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추이	32
[표 3] 과세표준에 따른 배당소득과 배당소득세율, 배당소득세액, 배당세액, 종합소득, 종합소득세	34
[표 4] 법인세율	35
[표 5] 과세표준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율과 종합소득세율	36
[표 6] 과세계급에 따른 배당금액과 1인당 배당소득 및 1인당 귀속법인세액	36
[표 7] 소득구간별 인원과 소득구간별 종합소득금액, 소득구간별 1인당 종합소득금액	38
[표 8] 과세계급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인원과 배당세액공제금액, 1인당 배당소득공제액	39
[표 9] ‘통합 A=임퓨테이션 방식’에 따른 소득분위에 위한 1인당 세액과 각 소득구간별 세액	41
[표 10] 1인당 개인소득 + 1인당 배당소득 + 1인당 귀속법인세액	43
[표 11] 1인당 귀속법인세액이 소득으로 치환됨에 따라 달라진 소득에 따른 재정수입	44
[표 12] ‘통합B=수입배당공제방식’ 통합	47
[표 13] ‘통합C=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 통합	50

[표 14] 개인소득세에서 이중과세를 제거한 A, B, C 통합방식과 현 상태 비교	52
[표 15]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 비교	53

【그림 차례】

[그림 1] ‘통합 A=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소득구간별 세입	42
[그림 2] 1인당 귀속법인세액이 소득으로 치환됨에 따라 달라 진 소득에 따른 재정수입 55	46
[그림 3] ‘통합 B=수입배당공제방식’에 의한 소득구간별 세입	49
[그림 4] ‘통합 C=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소득구간별 세입	51
[그림 5] ‘통합 A, B, C’ 소득구간별 세입 비교	5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법인의 본질은 주주의 집합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은 각각 주주의 귀속이익이 되며, 따라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되는 법인세는 개인단계에서 납부해야 할 주주의 소득세를 법인단계에서 선납하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나머지 소득이 주주에게 분배된 때에 그 배당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¹⁾ 이러한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통합방법을 근거로 현재의 조세데이터와 세율을 이용해서 통합한 후의 재정수입을 시뮬레이션 한다.

2. 연구의 목적

법인세의 존재는 조세의 이중부담의 문제를 갖고 있다. 조세의 이중부담은 소비자와 사회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1)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2004, 23~24pp

해소하기 위해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세금으로 인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없애므로 사회후생수준을 높이게 된다. 장재식(1976)은 연구에서 한국의 경우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유보할 경우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이 자본을 유보하여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기업이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는 성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 기업이 유보하기 보다는 배당한다면 주주의 소득이 높아져 소득향상과 주식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외국자본유치를 촉진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의 대상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8년 국세통계요람에서 배당소득의 소득종류별 신고현황, 소득규모별 분포자료, 소득규모별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서 배당세액공제를 구한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통합에 있어서 임퓨테이션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을 통해 소득규모별 1인당 세액과 소득규모별 세액, 전체세액을 계산한다. 위의 3가지 통합방식은 소득세에 있어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각의

통합방식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변화를 실증하고, 통합방식에 의해 계산된 개인소득세를 법인세와 통합하면 개인소득세에서의 이중과세가 제거되어 이 때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통합은 이중과세가 제거된 통합이 된다. 귀속법인세액을 사용하는 임퓨테이션 방식에 있어서 통합으로 인해 귀속법인세액의 개인귀속에 따른 소득규모별 1인당 소득의 변화와 소득규모별 소득의 변화를 계산하고, 이 때 소득이 오른 것을 무시하고 종전의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총 세입과 소득이 오른 것에 따라 달라진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의 총 세입을 시뮬레이션 하겠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개념정리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과세하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세율은 2009년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는 6%이고 1200~4600만원 이하는 16%이다. 4600~8800만원 이하는 25%이고, 8800만원 이상은 35%이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자총수입금액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가산액을 더한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 근로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 연금총수입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 기타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이라 하고 여기에 소득공제를 빼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세액감

면을 뺀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인 중간예납과 원천징수와 예정신고납부와 수시부과를 빼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된다.

2)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소득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원천 소득(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함)이 과세소득의 범위가 된다. 과세표준 계산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제해서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고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세율은 2007년 기준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이 1억이하일 경우 세율은 13%이고 1억이 초과될 경우 세율은 25%이다. 조합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12%이다.³⁾ 본 연구에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한해 1억이하일 경우 13%, 1억이 초과될 경우 25%로 계산하였다.

배당소득에는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2) 2008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08. 55pp와 2009년 근로자와 세금, 국세청, 2009년을 참고하였다.

3) 2008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2008. 308~309pp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 상법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4) 인정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배당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사채 투자신탁 제외)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기타 상기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⁴⁾

제 2 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1984년 석사과정 논문인 박승권의 논문은 본 연구의 모델이 되는 연구로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효율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나누어 실증했다. Harberger의 모형에 근거해서 법인/비법인, 개인소득수준에 따라 완전통합, 부분통합, 현상유지할 경우 각각 배당성향내 유보, gross-up한 배당, 산출배당세액, Tax-credit, 실제배당세액, 자본이

4)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32~33pp

득세액, 총세액, 초과세율, 분기세율을 구하고, 소득수준별로 초과세율이 주는 후생비용을 계산하여 세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했다.

David G. Davies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의 이점으로 Musgrave와 Musgrave(1980)를 인용하였다. 1) 자본소득에 대하여 노동소득보다 중과하지 않음으로써 수평적 공평회복 2) 법인분야의 자본소득 왜곡제거 3) 전체적인 투자수준의 향상. 이중과세는 비법인분야의 활동을 선호하여 투자를 왜곡시킨다. 잘못된 자원배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GDP의 0.05%에 이른다고 하였다. 완전통합방법으로는 주주들을 비법인사업의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없애고 모든 이익을 주주들에게 합산하는 조합과세방법,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개인주주에게 그 금액을 더하게 하고 법인세율보다 낮은 과세계급의 주주는 환급받게 하고 법인세율 이상 과세계급 주주는 초과부분의 세금을 내는 원천징수과세유지방법(Musgrave and Musgrave), 법인세를 폐지하고 배당은 일반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자본이득은 실현되지 않은 경우라고 완전히 과세하여 배당과 유보소득(주식가액의 평가에 따른)을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방법을 제시하였다. 부분통합방법으로는 일반소득세로부터 배당을 제외하는 것과 법인에게 법인소득으로부터 배당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시했다.⁵⁾

John R Graham(1999)은 개인소득세가 법인세 차감효과를 상쇄시킨다는 Miller의 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율이 높은 기업일수

5) 법인소득세, David G. Davies,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세무학논집 vol 2, 1989, 67~69 부분인용.

록 자본구조상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개인소득세는 부채로 인한 법인세 절감효과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⁶⁾

장재식(1976)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병과는 법인이 그 소득의 일부를 유보하는 경우에 오히려 총합적으로 세부담이 경감되는 과소과세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인이 그 소득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배당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이중과세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⁷⁾ 이는 박승권(1984)의 논문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이 오히려 세수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즉,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병과할 경우 법인이 세를 유보한 금액이 과소과세되지만, 통합할 경우 법인이 세를 유보한 금액에 대해서도 완전과세되므로 법인세 과세분이 개인소득세와의 통합시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승민(2008)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5년간 총신고법인수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것을 총부담세액으로 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나누어 법인세 부담률을 계산했다. 배당세액공제(gross-up)대상 배당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배당세액공제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빼서 연도별 법인세 부담률에 따른 추가조세부담액을 산출하였다.

예미경(2002)은 법인세 폐지에 있어서 완전통합방식과 부분통합

6)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연구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상쇄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김나영, 2001. 21p 부분인용.

7)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추가조세부담액 측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이승민, 2008, 3-4p 부분인용.

방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완전통합방식은 강제통합방법, 조합과세법이 있고 부분통합방식은 지급배당의 손금산입방식과 지급배당경감법, 수입배당세액공제법, 수취배당액제외법, 법인세 주주귀속법이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EU의 법인세제도와 이중과세방지방법을 시대에 따라 고찰하였다. 강제배당방법은 법인이익의 전액이 각각의 주주에게 배당금으로서 분배되고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조합과세법은 법인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법인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간주된 배당금에 따라 주주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부분통합방식인 지급배당의 손금산입방식은 지급배당은 법인소득의 계산에 있어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배당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이고, 지급배당경감법은 배당분에 대하여는 낮은 법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완화한다. 수입배당세액공제법은 법인소득에서 배당된 금액이 주주개인의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경우 주주의 소득세액에서 '과세소득에 합산된 배당액에 일정율(배당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취배당액제외법은 법인에 대해서는 배당여부에 관계없이 이익총액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을 개인소득세에 산입하여 그 배당소득의 일정부분 또는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인세주주귀속법은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소득은 배당금과 법인단계에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담한 법인세액(귀속법인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주주의 개인소득세액에서 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인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되는 귀속법인세액이 크면 그 차액은 주주에게 환급된다.

세액을 환급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에서 배당세액공제방법과 다르다.

8)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연구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상쇄효과에 관한 실증연구(김나영, 2001)는 부채로 자본조달을 한 기업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법인세에서 손금처리 되므로 그 비용만큼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개인소득세를 고려할 경우 법인세 절감 효과가 줄어들게 됨을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김진수(2004)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1994~2004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각각 배당비율이 100%일 때와 21%일 때 지분비율이 55%, 30%, 10%, 5%일때를 시뮬레이션하여 세 부담과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

<표 1> 선행연구 정리

저자	모형 통제변수 통합 · 개선방법	자료기간	대상
박승권(1984)	본 연구의 모델이 되는 연구로서 1977년 데이터와	1977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이 조사대상기업

8) 배당이중과세조정 의 새로운 동향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예미경, 2002, 14~20 부분인용

	<p>1984년의 조세체계에 근거해서 Harberger의 모형에 대입,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방안을 시뮬레이션 했다.</p> <p>법인/비법인, 개인소득수준에 따라 완전통합, 부분통합, 현상유지할 경우 각각 배당성향을 0, 50, 100으로 가상하여 소득세율, 자본소득, 배당, 사내유보, gross up한 배당, 산출배당세액, Tax credit, 실제배당세액, 자본이득세액, 총세액, 초과세율, 분기세율을 구하고 소득수준별로 초과세율이 주는 후생비용을 계산하여 세수의 변화를 실증했다.</p>		<p>으로 한 표본 기업의 데이터를 경제기획원의 국부통계 조사보고서의 업종별, 법인, 비법인 부문별 자본소득에 대한 데이터로 변형</p>
김나영(2001)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상	1985~1997	1980년부터 1997년까지

	<p>쇄효과 모형</p> <p>통제변수 : 재무적 곤경성, 기업규모, 성장성, 담보자산</p>		<p>계속 상장된 12월말 결산 기업 (비제조업 제외)</p>
예미경(2002)	<p>100% 법인세 주주귀속 방식의 법인세 주주귀속법 주장. 법인세율을 단일세율체제로 전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단일세율을 기준으로 전액가산하여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제거됨.</p>	1945~2000	<p>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EU의 법인세 과세제도</p>
David G. Davis	<p>완전통합방법 : 조합과세방법, 법인세를 원천징수로 유지하는 방법(Musgrave and Musgrave, 1976: 408),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법 -법인세 폐지요함, 배당은 일반소득과 마찬가지로</p>	1989	<p>미국</p>

	<p>취급, 자본이득은 실현되지 않은 경우라도 완전과세, 배당과 유보소득은 모두 과세, 유보소득은 주식가액의 평가에 따라 과세 (Musgrave and Musgrave, 1976: 409).</p> <p>부분통합방법 : 일반소득세로부터 배당을 제외하는 방법, 법인에게 법인소득으로부터 배당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p>		
이승민(2008)	<p>Gross-up 대상 배당소득 금액, 법인세부담률, 수정된 배당세액공제율과 공제액,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불완전성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으로 인한 추가조세 부담액을 측정하였다.</p>	2001~2005	국세청 국세 통계연보 총 신고법인수

<p>김진수(2004)</p>	<p>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배당소득과세제도를 살펴보고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에 관한 분석을 실시했다.</p> <p>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각각 배당비율이 100%일 때와 21%일 때 지분비율이 55%, 30%, 10%, 5%에서 시뮬레이션하여 실효세율, 이중과세금액을 계산하였다.</p>	<p>1994~2003</p>	<p>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배당소득과세제도, 한국에서 개인과 법인의 이중과세금액 계산</p>
------------------	--	------------------	---

제 3 절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의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통합했을 때 세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득분위별 영향은 어떠한지를 본다는 점, 현재의 데이터와 조

세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다르다.

1984년 박승권의 연구에서 초과세율이 (-)의 의미는 초과세율은 산출세율-종합소득세율 인데, 통합했을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다. 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조세의 역진성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장재식의 연구에서는 법인세의 존재가 기업이 유보하는 경우 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유보성향을 높인다고 하였다. 통합할 경우 기업의 유보에 따른 과소과세의 유인이 줄어들어 기업의 유보성향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거나 배당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민(2008)의 연구는 소득분위나 초과세입, 초과세율을 계산하지 않고, 추가조세부담액을 배당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부담률에 따른 추가조세부담액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산출세액-종합소득세액으로 초과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율-종합소득세율로 초과세율을 계산하여 소득분위에 따른 초과세율과 초과세입을 보이고, 현상유지, 부분통합A, 부분통합B, 완전통합할 경우 초과세율과 초과세입이 어떠한지 시뮬레이션하는 점이 이승민의 연구와 다르다.

제 4 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방법⁹⁾

1. 완전통합 방법

1) 카터위원회의 방안

완전통합 안은 이해관계인의 반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조합과세방식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는 Carter 위원회의 조정방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배당분에 관한 원천징수법과 동일하다. 기업들은 선택에 의해 사내유보분을 주주에게 과세 상 배당가능하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이득의 관정기주가 되는 주주의 취득원가는 그만큼 상승시키고, 후일 동 사내유보분이 배당될 경우 배당소득세는 면제되고, 동시에 주식의 취득원가는 그만큼 하락시킨다. ¹⁰⁾

9) R. Musgrave and P. Musgrave(1989) pp. 371~377, 한국상장사협의회(1997) pp 35~40, 최명근(1998) pp. 50~58, 이준규(2002) pp. 32~34를 참조하여 작성한 김진수 (2004)의 34~42pp를 주로 인용하고, 박승권(1984)의 논문도 참조하여 작성.

10)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에 대한 연구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박승권, 서울대학

2) 조합과세방식(partnership method)

법인의 구성원인 출자자를 공동사업의 조합원(partnership)으로 보고, 각 출자자에게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법인유보이윤을 포함한 법인의 총소득을 귀속할당시켜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며, 이 방법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합과세방법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사업법인(small corporation)에 대한 과세방법을 들 수 있다. 미국 세법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사업법인에 대하여 조합과세방법과 정규 법인소득세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과세방식의 장점은 첫째,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법인단계에서는 출자자단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만을 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상이한 소득원천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이 해소된다. 법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든지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든지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되는 것이다. 셋째, 배당소득에 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상의 우대조치를 함에 따라 사내유보를 선호하게 되는 현행 세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법인원천소득 중 배당분 뿐 아니라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세부담이 주어

교 대학원, 1984.

지기 때문에 배당이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조합과세방식의 단점은 첫째, 이 방법은 출자자에게 배당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법인의 유보소득이 아주 많고 출자자의 배당금이 아주 적은 경우 출자자는 내부유보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지불하기 위해 소유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므로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이 방법은 소규모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가 계속 바뀌는 데, 법인소득을 많은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데에는 엄청난 행정비용 및 신고비용이 따를 것이다. 셋째, 배당이 촉진됨에 따라 민간의 저축을 감소시키고 자본축적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동일한 금액의 법인원천소득이 사내유보되면 기업저축으로서 투자자금으로 활용되지만, 개인에게 배당되면 그 중 일부는 소비되기 때문이다. 11)

3) 자본이득과세방식(capital gain method)

법인소득 중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별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미분배소득인 법인유보에 대해서는 추가상승으로

11)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2004. 34~35pp

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전액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매각단계에서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서가 아니라 발생단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조합과세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자의 소득세납세에 수반되는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불배당의 비중이 낮은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득이 커서 출자자의 조세부담은 큰 반면 수취하는 배당액은 작기 때문이다. 12)

2. 부분통합방법

1) 지불배당공제 법

이는 현 법인세체계를 유지한 채, 단지 배당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방법으로 이 경우 법인세란 사내유보분에 대한 특별세로 변모하게 된다. 따라서 배당분은 세제상에서 금융비용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효율성,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해결되나,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례세인 법인세와 특혜적 누진세인 자본이득세가 중첩됨으로써, 앞서 지적한 문제가 노출되게 된다.

12)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2004. 36~37pp

이 방식은 배당성향이 1이 아닌 한 사내유보에 대한 특혜적인 과세로 인한 고전적 체계의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이는 곧 배분적 통합안의 기본적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차원에서 배당분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준다 하더라도 기업의 배당성향이 과연 종전보다 증가할 것인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앞서의 simulation에서 보는 바처럼 저소득 주주는 배당성향이 제고함에 따라 과다과세가 경감되고 있지만, 고소득 주주는 역으로 과소과세의 폭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양 집단간의 이해관계는 정면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처럼 기업의 배당정책 여하에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기업 혹은 산업간 배당성향의 차이가 있는 한 주식 시장은 소득계급별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해관계가 저달되는 데 상당한 시차가 있거나 혹은 어느 정도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 기업 차원에서 이와 같이 배당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은 사내유보행위에 대한 벌칙과세로 간주되므로 배당성향을 높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다. 배당성향의 제고는 효율성 측면의 장점을 높일 것이다. 13)

13)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에 대한 연구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박승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2) 원천징수 법

앞서의 지불배당공제법이 배당분에 대한 과다과세를 기업차원에서 조정하는 방법이었다면 이 방법은 동일한 효과를 주주차원에서 조정함으로써 달성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즉 법인세 과세방식을 기업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단지 배당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인세의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로 규정 이에 대한 조정을 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정방법은 주주들의 실제배당소득으로부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가 수령했을 원초적 배당소득을 추적, 이에 대해 배당소득세액을 산출하고, 법인세 납부분은 동 세액의 선납금으로 취급, tax credit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credit 액이 법인세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타 소득세의 감면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환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동 방법은 지불배당공제법과는 단지 배당분에 대한 과다과세 조정을 기업차원에서 하느냐, 주주차원에서 하느냐 하는 형식적 절차가 상이할 뿐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한 방법인 것이다. 14)

14)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에 대한 연구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박승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3) 지급배당경감방식(split-rate method)

지급배당경감방식은 법인원천소득 중 사내유보분에 대하여는 높은 법인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배당분에 대하여는 낮은 법인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때 유보분에 적용하는 높은 법인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 속하는 개인이 적용받고 있는 개인소득세의 실효세율과 같은 수준의 법인소득세율로 책정한다. 이처럼 유보분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이 과도하게 유보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배당분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4) 임퓨테이션방식(imputation method)

임퓨테이션방식은 출자자가 수령한 배당과 그 배당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부과된 법인세액을 개인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한 후 산출세액으로부터 법인단계에서 그 배당분에 대해 지불한 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귀속법인세액은 배당금(원천징수된 세액포함) × (법인세율/(1-법인세율))로 계산한다.

15)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2004. 38~39pp

[출자자의 개인소득세액 산정식]

: (배당금 + 귀속법인세액 + 다른종합소득) × 개인소득세율 - 귀속법인세액

임퓨테이션 방식은 법인원천소득 중에서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편으로 이중과세의 조정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는 이중과세의 조정이 출자자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인세 부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출자자의 배당소득을 과세할 때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자자의 배당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과중감을 제거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셋째,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소득세가 주주의 개인소득세를 법인이 예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퓨테이션 방식은 법인원천소득 중에서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주지만, 유보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정도 없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이 야기될 수도 있다. 둘째, 기업에게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높이려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없다. 셋째, 법인세율보다도 높은 한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출자자의 경우에는 수입배당 미신고에 의한 조세부담회피의 유인이 생길수도 있다.¹⁶⁾

16)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2004. 39~40pp

5) 수입배당공제방식(dividend-exclusion or deduction method)

수입배당공제방식은 법인원천소득에서 배당된 금액이 출자자의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출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수입배당금의 전액을 공제하거나 수입배당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이다.

[출자자의 세액산정식]

: ((배당금+ 다른 종합소득) - 배당금(전부 또는 일부)) × 개인소득세율(또는 법인세율)

이와같은 수입배당공제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가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점이다.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수입배당금을 출자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과 마찬가지로 익금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정책당국의 의지가 이중과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거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배당금의 일정비용을 정함으로써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수입배당공제방식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소득 중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있다. 이는 법인소득중에서 배당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에게 직접적인 세제상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성

향을 높인다거나 차입금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17)

6)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dividend-received-credit method)

법인원천소득에서 배당된 금액이 출자자의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출자자의 세액에서 과세소득에 합산된 배당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출자자의 세액 산정식]

: ((배당금 + 다른 종합소득) × 개인소득세율(또는 법인세율)) - (배당액 × 배당세액공제율)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은 현재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출자자의 과세소득에 합산되는 배당액은 귀속법인세를 가산한지 않은 배당액이다. 또한 세액보다 배당세액공제액이 큰 경우에도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은 출자자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소득 중 배당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17)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2004. 40~41pp

조정한다. 그러나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인소득 중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의 불공평문제가 있다. 법인소득 중에서 배당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당세액공제율이 출자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출자자가 받는 배당을 신고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그러나 배당세액공제율이 출자자의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높을 때에는 출자자가 수취한 배당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18)

18)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2004. 41~42pp

제 3 장 연구 설계 및 연구 분석틀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이중과세를 제거하여 개인소득세를 줄일 것이다. 특히 임퓌테이션 방식, 수입배당공제방식,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은 개인소득세에서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거한다. 이중과세가 제거된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세금부담을 줄일 것이고 따라서 국가의 재정수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의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된 수입배당공제방식은 종합소득에서 배당금을 제외하고 개인소득세율을 곱해 출자자의 세액을 산정하고 있고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은 배당액과 배당세액공제율을 곱한 배당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므로 재정수입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중과세의 제거는 조세에 있어서 불합리를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모형의 설정

모형설정에 있어서 현 법인부문 조세체계를 유지할 경우와 대별하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방법 중에서 부분통합 방법 중 출자자단계 조정방법인 임퓨테이션 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을 선정하였다. 완전통합방법인 조합과세방법은 기업별로 각 출자자의 지분비율과 각 출자자가 속한 소득구간을 알아야 하고, 법인유보이윤을 포함한 기업의 총 소득을 알아야 하는 데 자료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업의 모든 출자자의 지분비율과 기업의 모든 출자자가 속한 소득구간을 알기는 불가능하여 조합과세방법은 배제하였다. 자본이득과세방법은 완전통합방법으로 미분배소득인 법인유보에 대해서는 추가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전액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법인유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특히 추가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 기업의 모든 출자자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기업의 출자자의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배제했다. 결과적으로 남은 통합방법은 부분통합 방법밖에는 남지 않았고 부분통합 방법 중 법인단계조정방법인 지급배당공제방식은 타인자본의 이자와 자기자본의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타인자본 의존경영에서 탈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만 배당금을 손금 산입하는 것은 상법 제 462조 제 1항과 배치되고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

어 이 방식은 제외하였다. 지급배당경감방식은 배당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출자자단계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므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만일 높은 법인세율로 과세된 유보소득이 나중에 실제로 배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복잡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지급배당경감방식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남은 통합방법인 출자자 단계 조정방법에서의 임퓨테이션 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을 연구모형으로 삼았다.

1) 연구모형 1 : 현 법인부문 조세체계 유지

현 조세체계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합을 구하여 현 법인부문 조세체계를 유지할 경우의 세입을 구한다. 이를 위해 2008년 국세통계요람에서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구하여 합한다.

2) 연구모형 2 : 임퓨테이션 방식 통합

임퓨테이션 방식의 통합은 출자자의 개인소득세액 산정식 ‘(배당금+ 귀속법인세액+ 다른종합소득)*개인소득세율-귀속법인세액’을 이용하여 각 소득구간별 개인소득세를 구하고 각 소득구간별 개인소

득세와 각 소득구간별 배당소득인원을 곱하여 각 소득구간별 세입을 구하고 각 소득구간별 세입을 더하여 임퓌테이션 방식에 있어서의 총 세입을 구한다. 이를 위해서 소득구간별 1인당 배당 소득, 소득구간에 따른 배당소득, 소득구간별 배당소득인원, 소득구간별 1인당 종합소득, 소득구간별 종합소득, 소득구간별 1인당 귀속법인세액 자료와 소득구간별 개인소득세율 자료가 필요하다. 귀속법인세액은 배당금(원천징수된 세액 포함) \times (법인세율/(1-법인세율))로 구하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통합될 경우 귀속법인세액은 개인소득으로 귀결되므로 통합할 경우 개인별 소득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세율을 적용할 경우와 실증적으로 개인별 소득 변동이 있다면 기존의 소득구간별 세율을 적용할 경우와 변동에 따라 달라진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경우를 대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단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하고 종합소득내에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임퓌테이션 방식의 산정식은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text{귀속법인세액} + \text{종합소득}) \times \text{개인소득세율} - \text{귀속법인세액}$ 으로 수정하여 계산해야 한다.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상은 종합과세하므로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연구모형 3 : 수입배당공제방식 통합

수입배당공제방식 통합은 $((\text{배당금} + \text{다른종합소득}) - \text{배당금}) \times \text{개인소득세율}$ 로 계산한다. 종합소득에는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고 배당금 + 다른종합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하므로 식 $((\text{배당금} + \text{다른종합소득}) - \text{배당금}) \times \text{개인소득세율}$ 은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이상인 경우에 한 해, $(\text{종합소득} - \text{배당금}) \times \text{개인소득세율}$ 로 수정하여 계산해야 한다.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상은 종합과세하므로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연구모형 4 :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 통합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 통합은 $((\text{배당금} + \text{다른종합소득}) \times \text{개인소득세율}) - (\text{배당액} \times \text{배당세액공제율})$ 로 계산한다. 단, 세액보다 배당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에도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합소득에는 배당소득이 포함되므로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 통합은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text{종합소득}) \times \text{개인소득세율}) - (\text{배당액} \times \text{배당세액공제율})$ 로 수정하여 계산해야 한다.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상은 종합과세하므로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4 장 실증분석결과

제 1절 기초통계량 분석

본 연구모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기초통계량은 국세청의 2008년 국세통계요람과 한국조세연구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1>은 1984년부터 2008년까지의 최고소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을 나타낸 것이다. 최고소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의 변화추이는 개인소득세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

<표2> 최고소득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의 변화추이(1984 ~ 2008) 19)

	최고소득세율(%)	배당소득세율(%)
1984	55	10

19)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2006, 49p와 2009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국세청, 2009, 124p, 144p 참조

1985	55	10
1986	55	10
1987	55	10
1988	55	10
1989	50	10
1990	50	10
1991	50	20
1992	50	20
1993	50	20
1994	45	20
1995	45	20
1996	40	15
1997	40	15
1998	40	20
1999	40	20
2000	40	20
2001	40	15
2002	36	15
2003	36	15
2004	36	15
2005	35	14

2006	35	14
2007	35	14
2008	35	14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 공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소득구간별 배당소득과 배당소득세율, 배당소득세액, 배당세액공제율,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다. 배당소득세액은 소득구간이 상위로 갈수록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3> 과세표준에 따른 배당소득과 배당소득세율, 배당소득세액, 종합소득, 종합소득세

규모별 과세표준	배당소득 (단위: 백만원)	배당 소득 세율	배당소득 세액 (단위:백만 원)	종합소득 (단위: 백만원)	종합소득세 (공제포함) (단위: 백만원)
0	0	14%	0	1,292,378	2,296
1천만원 이하	63		6	12,755,001	238,147
2천만원 이하	208		0	-	51,368
3천만원 이하	-		3	11,989,369	458,925

4천만원 이하		1,411	종합 과세	0	4,603,112	199,914
4.6천만원 이하		-		6	2,469,046	109,472
6천만원 이하		216,044		77	4,625,210	241,127
7천만원 이하				344	2,667,788	156,955
8천만원 이하		213,383		701	2,328,330	143,205
8.8천만원 이하		-		1,053	1,610,772	106,471
1억 이하		198,197		2,595	2,092,428	155,932
2억 이하		765,097		40,034	9,805,724	914,015
3억 이하		486,337		38,356	4,043,995	448,991
5억 이하		632,047		59,866	3,759,076	436,541
5억 초과	10억이하	3,763,398		91,009	3,669,248	413,936
	10억초과			347,067	7,379,610	717,533

<표3>에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최고소득구간인 8800만원이상이 35%로 <표1>에서 최고소득세율을 표시한 1993년의 50%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것이다.

<표4> 과세표준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율과 종합소득세율

	배당세액공제율	종합소득세율(2009년 개정내용)
--	---------	-----------------------

1200만원이하	19%	6%
1200~4600만원		16%
4600~8800만원		25%
8800만원이상		35%

법인세율과 귀속법인세액계산방법 소득구간별 배당금액과 1인당 배당소득 및 1인당 귀속법인세액은 다음과 같다.

<표5> 법인세율

		법인세율
영리법인	1억 이하	13%
비영리법인	1억 초과	25%
조합법인		12%

<표6> 과세계급에 따른 배당금액과 1인당 배당소득 및 1인당 귀속 법인세액

	인원 ²⁰⁾	배당금액(원)	1인당배당소득(원)	1인당귀속법인세액 ²¹⁾ (원)
--	-------------------	---------	------------	------------------------------

0이하	16	0	0	0
1천만이하	22	63000000	2863636	427899
2천만이하	56	208000000	3714285	555008
4천만이하	144	1411000000	9798611	1464160
6천만이하	7657	2.16044E+ 11	28215227	4216068
8천만이하	5885	2.13383E+ 11	36258793	5417980
1억이하	4699	1.98197E+ 11	42178548	6302541
2억이하	13188	7.65097E+ 11	58014634	19338211
3억이하	5011	4.86337E+ 11	97053881	32351293
5억이하	4053	6.32047E+ 11	155945472	51981824
5억초과	5092	3.7634E+ 12	739080518	246360172
총합	45823	6.27619E+ 12		

과표구간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인당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게 되어 과표구간 1억원 이하의 바로 아래구간인 8천만원이하 구간까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억이하 구간부터는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게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소득구간별 종합소득금액과 인원, 1인당 종합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20) 2008 국세통계연보 3-2-3. 소득종류별 신고현황(1/2), 106p

21) 1인당 귀속법인세액=1인당 배당소득(원천징수된세액포함)*(법인세율/(1-법인세율))

<표7> 소득구간별 종합소득금액과 인원, 1인당 종합소득금액

	인원 ²²⁾	종합소득금액(원)	1인당종합소득(원)
0이하	77856	0	0
1천만이하	1547772	7.8695E+ 12	5084403
2천만이하	635061	8.93769E+ 12	14073745
4천만이하	390658	1.09573E+ 13	28048264
6천만이하	169751	8.29236E+ 12	48850115
8천만이하	85095	5.8712E+ 12	68995804
1억이하	48793	4.35051E+ 12	89162543
2억이하	81806	1.11202E+ 13	135933611
3억이하	18464	4.44634E+ 12	240811308
5억이하	10537	3.9736E+ 12	377109613
5억초과	8626	1.13055E+ 13	1310627058
총합	3074419	7.71241E+ 13	

과세계급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인원과 배당세액공제금액, 1인당 배당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배당세액공제인원의 대부분은 2억 이하에서 1억 이하 사이구간에 몰려있는 특징을 보였다.

22) 2008 국세통계연보 3-1-4.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현황(1/20) 81p

<표8> 과세계급에 따른 배당세액공제인원과 배당세액공제금액, 1인당 배당소득공제액

	배당세액공제인원 ²³⁾	배당세액공제금액	1인당배당소득공제액
0이하	0	0	0
1천만이하	9	100000000	11111111
2천만이하	3	0	0
4천만이하	7	2000000	285714
6천만이하	141	21000000	148936
8천만이하	1731	600000000	346620
1억이하	2459	2384000000	969499
2억이하	8662	36705000000	4237474
3억이하	3838	38507000000	10033090
5억이하	3321	60671000000	18268894
5억초과	4496	4.42217E+ 11	98357873
총합	24667	5.81207E+ 11	

23) 2008 국세통계연보 3-1-4.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현황(11/20) 91p

제 2 절 실증분석 방법과 결과

1.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8년 국세통계요람 8-1-4 법인세 신고현황(6/8)에서 총 부담세액을 살펴보면 법인세 총액이 29,885,107(백만원)으로 나온다. 즉 29조 8천 8백 51억 7백 만원이다. 국세통계요람 3-1-4의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현황(20/20) 납부할세액을 보면 총 금액은 4,794,828(백만원)으로 4조 7천 9백 4십억 8억 2천 8백만원이다. 현 제도하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합한 금액은 34,679,935(백만원), 34조 6백 7십 9억 7천만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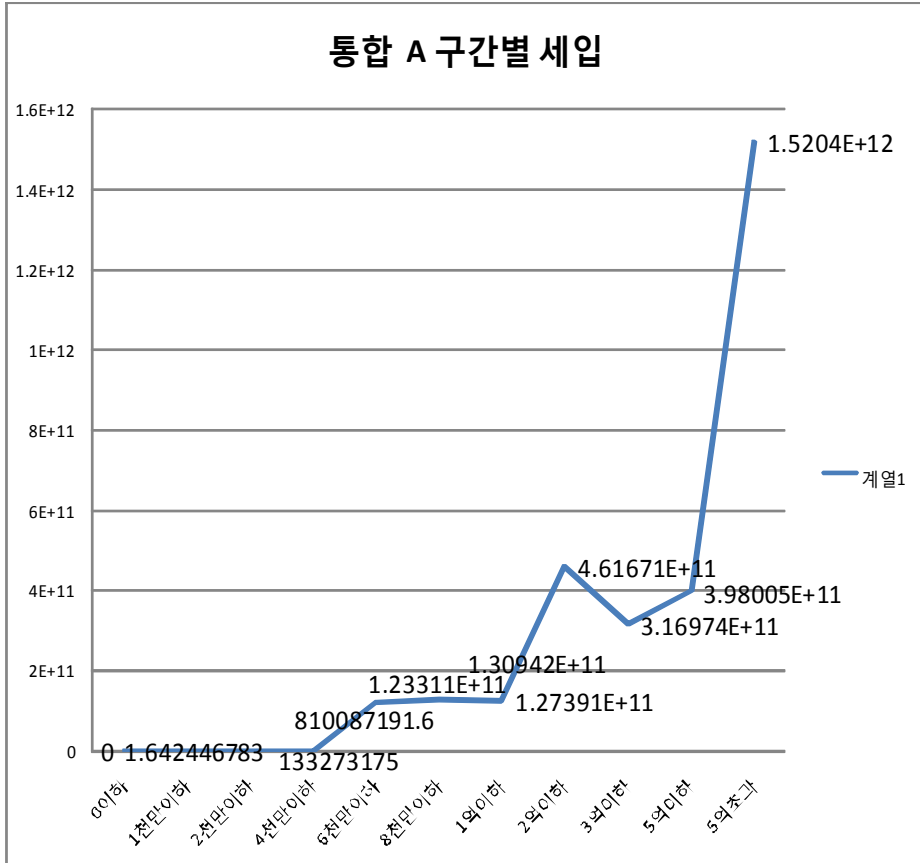
2. 임퓌테이션 방식에 의한 결과

임퓌테이션 방식은 (귀속법인세액+ 종합소득) × 개인소득세율 - 귀속법인세액으로 구한다. 단,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한다.

<표9> ‘통합 A=임퓌테이션 방식’에 따른 소득분위에 의한 1인당 세액과 각 소득구간별 세액

	통합A 1인당 세액	통합A 각 구간전체 세액
0	0	0
1천만원이하	74656	1.642446783
2천만원이하	2379878	133273175
4천만원이하	5625605	810087191
6천만원이하	16104284	1.23311E+ 11
8천만원이하	22250164	1.30942E+ 11
1억원이하	27110238	1.27391E+ 11
2억원이하	35006926	4.61671E+ 11
3억원이하	63255616	3.16974E+ 11
5억이하	98200179	3.98005E+ 11
5억초과	298585357	1.5204E+ 12
총 세액		3.07963E+ 12

<그림 1> '통합 A=임퓨테이션 방식'에 의한 소득구간별 세입



4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4천만원이하의 배당소득은 임퓨테이션 방식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1인당 배당소득과 1인당 종합소득과 1인당 귀속법인세액을 더하여 계산하였다. 4천만원 이하 다음구간인 6천만원 이하 구간부터는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이 합산되므로 배당소득을 빼고 1인당 종합

소득과 1인당 귀속법인세액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위의 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총 세액은 3조 796억 3천만원이 나왔다. 임퓨테이션 방식 계산에서 통합으로 인한 1인당 소득 증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인당 종합소득 + 1인당 배당소득 + 1인당 귀속법인세액을 소득구간별로 더해보았다. 이 때 1억이하 구간에서는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 되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것이므로 1인당 배당소득을 빼서 중복계산의 우려를 제거했다.

<표 10> 1인당개인소득 + 1인당배당소득 + 1인당귀속법인세액
(단위: 원)

0이하	0	0이하구간유지
1천만이하	8375939	1천만원이하구간유지
2천만이하	18343039	2천만원이하구간유지
4천만이하	39311036	4천만원이하구간유지
6천만이하	53066184	6천만원이하구간유지
8천만이하	74413785	8천만원이하구간유지
1억이하	95465085	1억이하구간유지
2억이하	155271822	2억이하구간유지
3억이하	273162602	3억이하구간유지
5억이하	429091437	5억이하구간유지
5억초과	1556987231	5억초과구간유지

1인당 귀속법인세액을 개인소득으로 더한다고 해서 1인당 소득 구간이 바뀌지는 않았고, 소득구간 내 소득증대로 이어졌다. <표 11>은 1인당 귀속법인세액이 소득으로 치환됨에 따라 달라진 소득에 따른 재정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계산방식은 1천만원이하의 경우 ((각 구간별 1인당 개인소득 + 각 구간별 1인당 배당소득 + 각 구간별 1인당 귀속법인세액) × 0.06 - 각 구간별 1인당 귀속법인세액) × 각 구간별 배당인원 으로 한다. 0.06은 종합소득세율 6%를 의미하는 것이다. 2천만원이하와 4천만원이하는 같은 공식을 사용하되 종합소득세율 16%인 0.16을 곱해서 계산한다. 6천만원이하와 8천만원이하는 종합소득세율 25%인 0.25를 곱해서 계산한다. 1억이하, 2억이하, 3억이하, 5억이하, 5억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 35%인 0.35를 곱해서 계산하고 계산한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1인당 귀속법인세액이 소득으로 치환됨에 따라 달라진 소득에 따른 재정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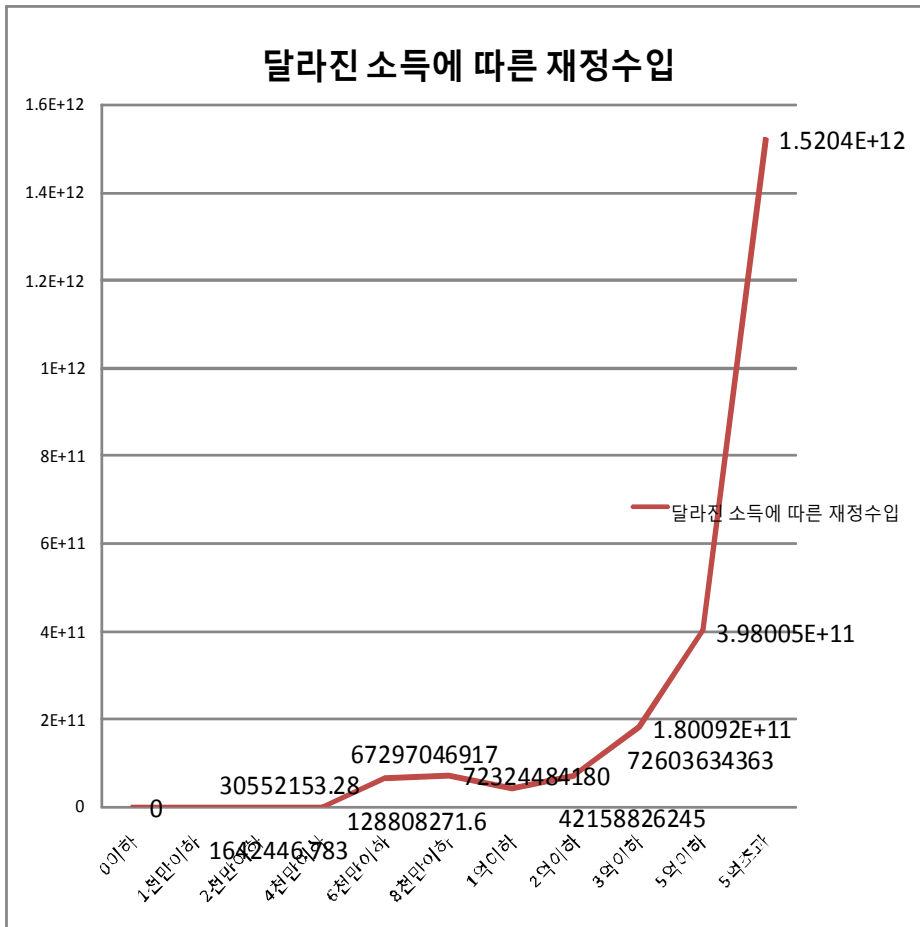
0 이하	0
1천만원 이하	1,642,446(원)
2천만원 이하 구간 유지	30,552,153(원)
4천만원 이하 구간 유지	128,808,271(원)
6천만원 이하 구간 유지	67,297,046,917(원)
8천만원 이하 구간 유지	72,324,484,180(원)

1억 이하 구간 유지	42,158,826,245(원)
2억 이하 구간 유지	72,603,634,363(원)
3억 이하 구간 유지	1.80092E+ 11(원) 1800억 9천 2백만원
5억 이하 구간 유지	3.98005E+ 11(원) 3980억 5천만원
5억 초과 구간 유지	1.5204E+ 12(원) 1조 5204억원
총 재정수입	2.35304E+ 12(원) 2조 3530억 4천만원

종합소득세율의 경우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이상부터 4600만원 이하는 16%, 4600만원 이상부터 8800만원 이하는 25%, 8800만원 이상은 35% 이므로 이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위의 표를 계산했다.

<표11>에서 도출한 결과를 보면 소득구간이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율적용은 변화하지 않는다. 소득구간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달라진 소득구간을 무시하고 종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림 2> 1인당 귀속법인세액이 소득으로 치환됨에 따라 달라진 소득에 따른 재정수입



3. 수입배당공제방식 통합

수입배당공제방식은 $((\text{배당금} + \text{다른종합소득}) - \text{배당금}) \times \text{개인소득세율}$ 로 구한다. 1인당 세액은 1인당 배당금과 1인당 종합소득을 사용하고 각 구간전체세액은 각 구간의 1인당 세액 \times 각 구간 배당인원을 사용해서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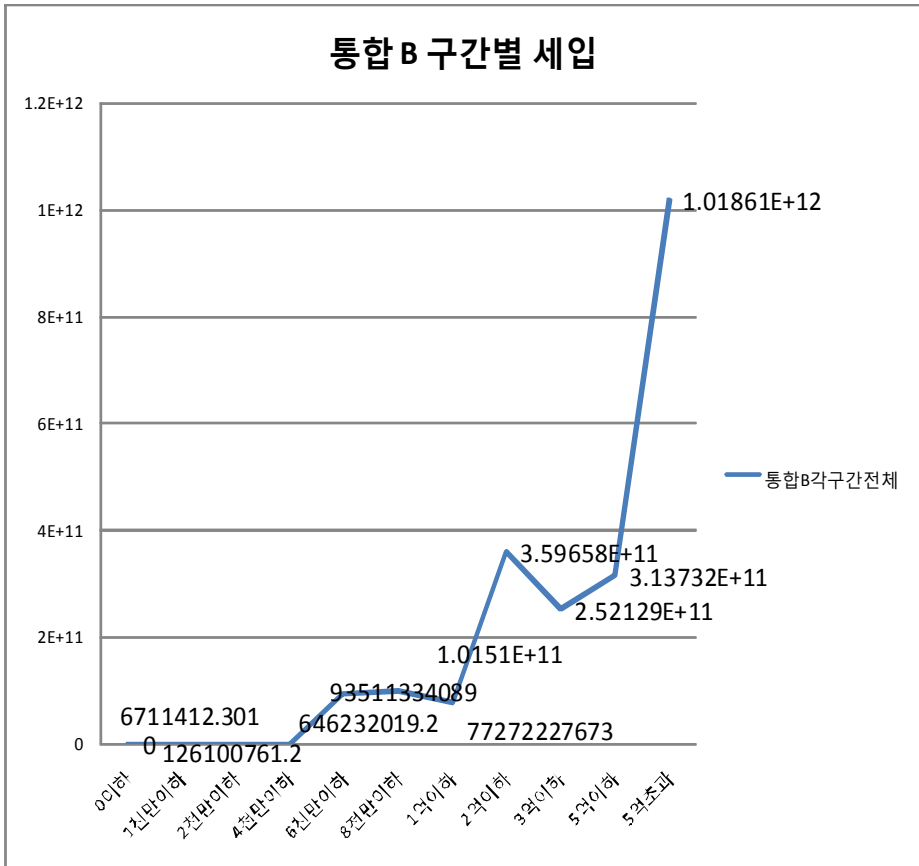
<표12> ‘통합 B=수입배당공제 방식’ 통합

	통합B 1인당 세액	통합B 각 구간전체 세액
0	0	0
1천만원이하	305064	6711412
2천만원이하	2251799	126100761
4천만원이하	4487722	646232019
6천만원이하	12212528	93511334089
8천만원이하	17248951	1.0151E+ 11
1억원이하	16444398	77272227673
2억원이하	27271641	3.59658E+ 11
3억원이하	50315099	2.52129E+ 11
5억원이하	77407449	3.13732E+ 11
5억원초과	200041288	1.01861E+ 12

총 세액		2.2172E+ 12
------	--	-------------

수입배당공제방식 계산방법 중 (배당금 + 종합소득) - 배당금(전부 또는 일부)에서 모형을 간단히 하기 위해 배당금의 전부를 빼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 때, 배당금이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당금 + 종합소득 - 배당금은 종합소득이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 × 개인소득세율로 계산하였고 4천만원 이상의 경우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므로 (종합소득 - 배당금) × 개인소득세율의 공식을 통해서 표11의 결과를 도출했다. 개인소득세율은 소득분위에 따라 2009년 개정내용인 1200만원 이하는 6%, 1200~4600만원 이하는 16%, 4600~8800만원 이하는 25%, 8800만원 이상은 35%로 계산했다. 그 결과 총 세액은 2조 2천 172억원이 나왔다.

<그림 3> ‘통합 B = 수입배당공제 방식’에 의한 소득구간별 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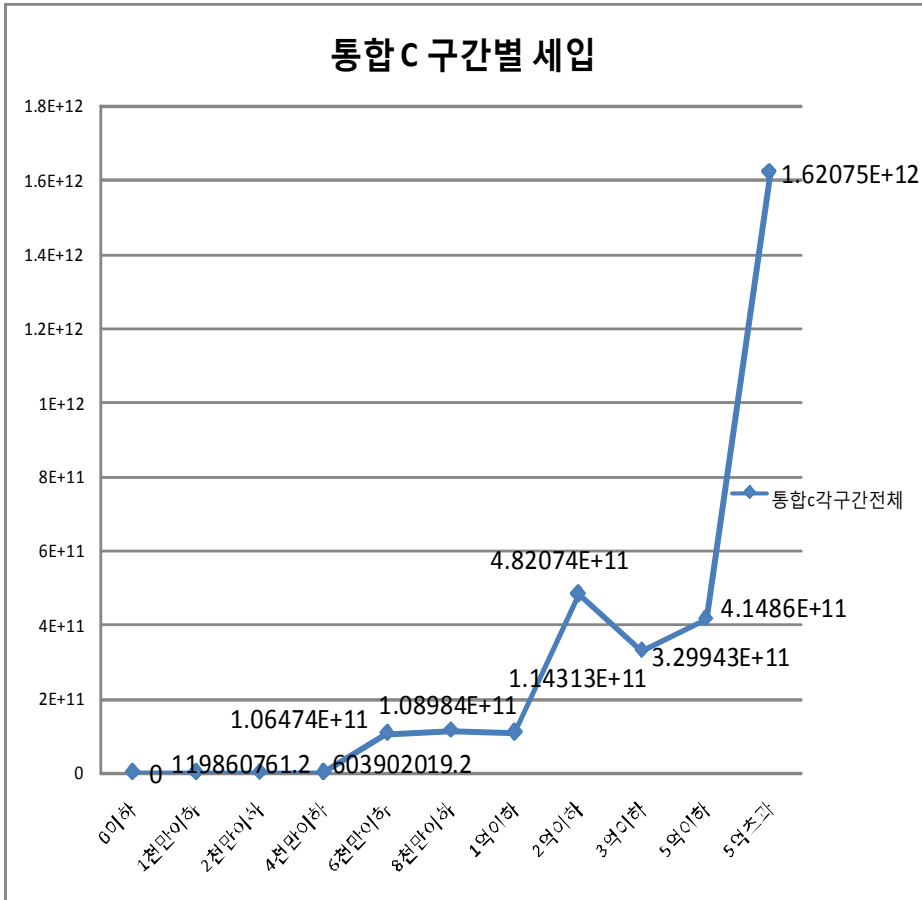
4. 수입배당세액 공제방식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은 ((배당금+ 다른종합소득)×개인소득세율) - (배당액×배당세액공제율)로 구한다. 단, 세액보다 배당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에도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표13> '통합 C=수입배당세액공제 방식' 통합

	통합C 1인당 세액	통합C 각 구간전체 세액
0	0	0
1천만원이하	-67208	0
2천만원이하	2140370	119860761
4천만원이하	4193764	603902019
6천만원이하	13905442	1.06474E+ 11
8천만원이하	19424478	1.14313E+ 11
1억원이하	23192966	1.08984E+ 11
2억원이하	36553983	4.82074E+ 11
3억원이하	65843720	3.29943E+ 11
5억원이하	102358725	4.1486E+ 11
5억원초과	318294171	1.62075E+ 12
총 세액		3.17813E+ 12

<그림 4> ‘통합 C =수입배당세액공제 방식’ 통합



수입배당공제방식은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지만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1인당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과표구간 1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을 계산을 종합소득 × 개인소득세율 - (배당액×배당세액공제율)로 하였다. 세액보다 배당세액공제액이 더 큰 경우

에도 환급하지 않으므로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1인당 세액이 음수가 나왔지만 1천만원 이하 구간세액을 0이라고 하여 계산했다. 각 구간 전체 세액은 각 구간별 1인당 세액에서 각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인원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다. 계산결과 총 세액은 3조 1천 7백 81억 3천만원이 나왔다.

제 3 절 실증분석 결과 해석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와 통합할 경우 개인소득세에서 이중과세를 제거하는 A(임퓨테이션 방식), B(수입배당공제방식), C(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를 실증분석하였다.

<표 14> 개인소득세에서 이중과세를 제거한 A, B, C 방식과 현 상태비교

현 상태유지 (단위: 천만원)	A 임퓨테이션 (단위: 천만원)	B 수입배당공제 (단위: 천만원)	C 수입배당세액공제 (단위: 천만원)
4,79482E+ 12	3.07963E+ 12	2.2172E+ 12	3.17813E+ 12
현재와 차이	171519E	257762E	161669E

<표 15>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 비교

현 상태 (법인세 + 개인 소득세)	A 임퓨테이션 (법인세 + 개인 소득세)	B 수입배당공제 (법인세 + 개인 소득세)	C 수입배당세액 공제 (법인세 + 개인 소득세)
34,679,927,000 ,000(원) (34조 6799억 2천 7백만원)	32,964,737,000 ,000(원) (32조 9647억 3천 7백만원)	32,102,307,000 ,000(원) (32조 1023억 7백만원)	33,063,237,000 ,000(원) (33조 632억 3 천 7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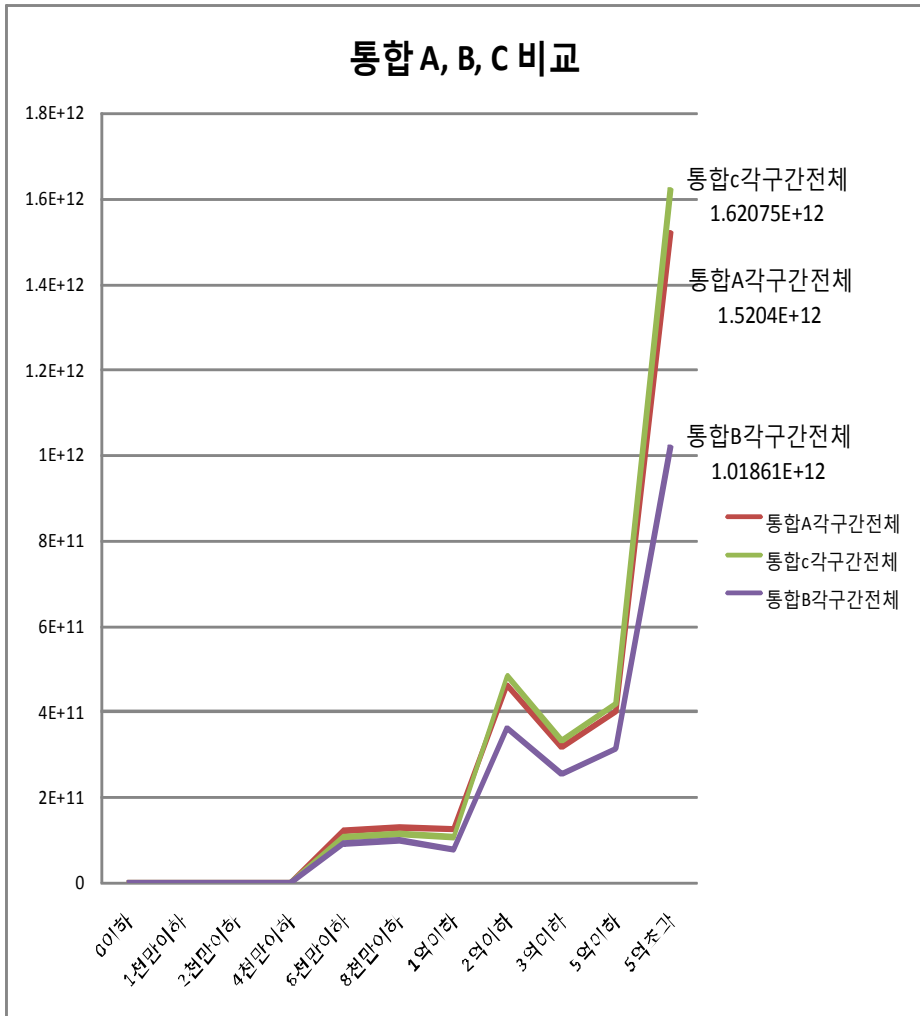
현 상태유지의 경우 개인소득세입은 4조 7948억 2천만이고 A 임퓨테이션 방식은 3조 796억 3천만원, B 수입배당공제 방식은 2조 2172억원, C 수입배당세액공제 방식은 3조 1781억 3천만원이다. 현 세액과의 차이는 A 임퓨테이션 방식은 1조 7151억 9천만원, B 수입배당공제 방식은 2조 5776억 2천만원 C 수입배당세액공제 방식은 1조 6166억 9천만원이었다. 현 세액과의 차이만큼 이중과세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실제 조세정책이 통합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각 통합방식과 현재와의 차이만큼 개인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개인소득세 만큼 소비자의 후생수준은 높아진다. 따라서 연구문제 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개인소득세를 줄이게 될 것이다’가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2.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재정수입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이다

는 줄어든 개인소득세 만큼 재정수입이 줄어들 것이므로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수입 감소는 이중과세의 제거로 인한 것이다. 현재 국세청에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배당세액 공제율은 16%에 불과하다. 전체 배당소득 6,276,185(백만원)²⁴⁾ 중 배당세액공제액은 581,117(백만원)²⁵⁾으로 실증한 이중과세조정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아래 표는 이중과세를 조정한 각 통합방식의 소득구간별 개인소득세를 비교한 것이다.

24) 2008 국세통계요람 3-2-3 소득종류별 신고현황 (1/2) 배당소득, 국세청, 2008

25) 2008 국세통계요람 3-1-4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11/20)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 국세청, 2008

<그림 5>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부분통합 방법별 재정수입비교



제 5 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부분통합방법인 임퓌테이션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을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8년 조세통계요람의 자료와 2009년의 조세체계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분통합방법으로 기존의 이중과세가 제거되어 개인소득세가 줄어들었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개인소득세가 줄어들어 재정수입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이중과세라는 불합리를 제거한데 따른 것이다.

본 연구가 모델로 삼은 1984년 박승권의 논문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통합할 경우 오히려 재정수입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실증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박승권의 논문과 달리 소득구간에 따른 1인당 배당소득과 귀속법인세액, 종합소득, 현재의 조세체계를 통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을 계산한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통합으로 재정수입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박승권의 논문은 소득분위별 1인당 배당소득과 귀속법인세액, 종합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소득세율은 지금과

같은 4분위가 아닌 17분위로 나뉘져 있어서 치밀한 조세과약이 가능했다. 법인세율이 현재와 같은 13~25%가 아니라 박승권(p.67)에서 보는 바대로 법인부문 소득세율(법인세율)을 53.6%로 하고 계산하였다. 게다가 1984년 박승권(p.73)의 <표 13>에서와 같이 종합소득계급 84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무려 64.6%이고 종합소득계급 8400만원 초과 계급이 이자-배당소득 분포의 54.56%를 차지하여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이 재정수입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임퓨테이션 방식과 수입배당공제방식, 수입배당세액공제방식을 현재의 조세체계와 세액으로 실증하여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했을 경우의 개인소득세를 구하고,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할 경우의 재정수입을 구한 데 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이 개인소득세의 감소로 재정수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였고,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이중과세의 제거를 통해 개인소득세가 줄어들어 개인소득세의 부담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한 개인소득세가 법인세와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소비자의 후생증대라는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2. 연구의 한계

자료의 한계로 인해 법인세를 폐지하는 완전통합이 아니라 개인 소득세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고 법인세를 유지하는 부분통합방법을 사용하였다. 부분통합방법은 개인소득세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중과세가 제거된 개인소득세를 법인세와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통합방법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출자자(주주)에게 지분비율(주식)에 비례하여, 법인유보이윤을 포함한 총 소득을 귀속할당시켜 출자자단계에서 소득세만을 부과하는 방식²⁶⁾이다. 이는 본 논문의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제 4절에서 이미 검토하였다. 완전통합방법을 실증하려면 법인세를 내는 전체기업에서 각 기업마다 보유지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각 사람이 보유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보유지분에 따른 배당은 얼마인지, 보유지분을 가진 사람의 소득계급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법인세를 내는 전체기업의 각 기업마다 유보소득과 실제소득은 얼마인지의 자료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실제로 구해서 완전통합 공식대로의 계산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완전통합에 있어서 배당이 늘어나게 될 경우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되어 소득구간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부분통합에 있어서의 기업

26) 배당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2004, 34p.

의 유보와 배당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기업의 유보와 배당이 변화한다면 이에 따른 재정수입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계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배당소득의 변화로 소득구간이 변화할 경우의 시뮬레이션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유럽에 있어서 각 국의 조세체계와 조세자료를 가지고 비교정책측면에서 부분통합방법과 전체통합방법에 있어서 재정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가치 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통합할 경우 외국인자본을 추가로 더 유치할 수 있을지 분석하는 것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통합의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김동건(2005), 「현대재정학」, 서울 : 박영사.

김완석(2007), 「법인세법론」, 서울 : 광고 이택스.

오연천(1992), 「한국조세론」, 서울 : 박영사.

이준구(2008), 「미시경제학」, 서울 : 법문사.

정기화 역, Richard A. Posner 저(2003), 「법경제학」, 서울 : 자유기업원.

2) 논문

김기석(1998), “1980년대 OECD 국가의 조세개혁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나영(2001),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연구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상쇄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대(1997),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 유연화에 대한 실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우철(2005),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진수(2004),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박승권(1984),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에 대한 연구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안효민(2004),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승민(2008), “배당세액공제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추가조세부담액 측정”, 강원대학교 대학원.
- 이현선(1997),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경제연구,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예미경(2002), “배당이중과세조정의 새로운 동향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병목(2006),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장재식(1983),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연구 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총서.
- 최명근(2001), “기업 및 주주 과세의 개선방안 = Reform measures of the corporates and shareholders tax system in Korea”,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서.

한국상장사협의회(1997), “배당소득세제의 개선방안”.

한승수(1982), “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율에 관한 연구 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총서.

현지섭(2008),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David G. Davies(1989), “법인소득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논집
Vol 2.

3) 자료

국세청, 근로자와 세금. 2009.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009.

국세청, 국세통계요람, 2008.

4) 사이트

<http://www.nts.go.kr/> 국세청

<http://finance.na.go.kr/> 국회기획재정위원회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http://www.nso.go.kr/> 통계청

2. 국외문헌

Musgrave R. A. and P. B. Musgrave(1989),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McGraw-Hill Book Co.

Daniel N. Shaviro(2004), Corporate tax shelters in a global economy : why they are a problem and what we can do about it, Washington, D.C. : AEI Press, 2004.

William M. Gentry, R. Glenn Hubbard(1998), Fundamental tax reform and corporate financial policy, Cambridge, MA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8.

Edwards, C(2004), Corporate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Kerry, Bush, and Congress Fall Short/ , Tax Notes International(v.36 no.1).

Abstract

Actual Analysis about Corporate Tax and Individual Income Tax Part Integration Affect of Financial Income

Hyunseung Rhe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porate tax and individual tax have a double taxation problem. because individual tax include an allotment income tax. two hypothesis confrontation each other, one hypothesis is individual tax rate more higher than corporate tax rate

therefor integration of individual tax and corporate tax bring much more financial income. the other hypothesis is dividend income taker is small number result in reduce the financial income. For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prove integration of corporate tax and individual tax. integration method have a two way. one is a perfect integration the other is a part integration. perfect integration have a risk with tax evasion device for corporate. also perfect integration against the tax law. accordingly this study exclude a full integration and adopt a part integration. part integration method is consist of a imputation method and dividend exclusion method, dividend-received-credit method. result a actual proof analysis part integration of individual tax and corporate tax is reduce a financial income. but part integration is remove the irrational double taxation. according to an actual analysis through statistical year book of national tax 2008 and south korea tax system 2009 and south korea tax law 2009. this study is exclude a value judgement.

**keywords : coporate tax, individual tax, double taxation,
allotment income tax, actual proof analysis, part integration**

Student Number : 2007-22283